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대상지역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설치기준 완화(별표 6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의 유형·기능이 화물차 관련 6종류 시설로 한정됨에 따라 다양한 민간수요 대응이 곤란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제약이 되므로, 임의시설 유형에 대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다양한 임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등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대상지역 기준 정비(제43조의3)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유형에 국지도 및 지방도를 추가하고, 통행량 산정대상 화물차 차종 확대, 통행량 기준 일부 조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1호 중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1만2천대”를 “왕복 1만5천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3천대”를 “편도 3천5백대”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u>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1만2천대 이상인 지역</u> 2. 3. (생략) 4.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u>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u> ② (생략)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① ----- ----- ----- -----. 1. ----- ----- ----- ----- <u>화물자동차</u> ----- ----- ----- <u>왕복 1만5천대</u> ----- ----- 2. 3. (현행과 같음) 4. ----- <u>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u> ---- <u>화물자동차</u> ----- ----- <u>편도 3천5백대</u> ----- ②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제43조의3 관련)

시 설 기 준
1. 자동차의 하중(40톤)·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2.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구내차도 또는 주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구내차도 또는 주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6. 주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7.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구비할 것 가. 필수시설: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및 정비소 나. 임의시설: 세탁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시설(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 각목의 시설과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판매를 위한 시설은 제외하고, 임의시설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의 연면적 중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음)

〈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연 락 처	044-201-4009, 4010